



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선	기 관 의 장
람	

제 628호 2026. 7. 15.

고 시

- 순창군 고시 제2026-131호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고시 1
- 순창군 고시 제2026-133호 순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 변경(2차) 승인 고시 6
- 순창군 고시 제2026-136호 쌍치면 용전지구 개간사업 준공 고시 8
- 순창군 고시 제2026-137호 팔덕면 광암지구 개간사업 시행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9
- 순창군 고시 제2026-138호 적성면 석산지구 개간사업 시행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1
- 순창군 고시 제2026-139호 인계면 도룡지구 개간사업 시행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3

공 고

- 순창군 공고 제2026-767호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5

회								
람								

발 행 : 순창군 (편집 기획예산실)

순창군 고시 제2026 - 131호

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고시

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(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)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(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등)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 및 고시합니다.

2026년 6월 30일

순창군수

1. 소규모 위험시설 명칭 및 위치

연번	시설명칭		시군구	읍면동	리	지면		전체정비계획		비고
	구분	명칭				시작	지점	끝나는 지점	연장(m)	폭(m)
1	농로	호계제농로	순창군	인계면	갑동리	1291		1252	58	2.5
2	세천	평지마을세천	순창군	팔덕면	창덕리	269		269	87	2.6
3	세천	입석마을세천	순창군	적성면	석산리	283,396		283,396	135	3.0
4	세천	청계마을세천	순창군	팔덕면	청계리	1181		1181	148	3.7

2.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계획

연번	시설명칭		사업시기	소요예산 (백만원)	사업내용	비고
	구분	명칭				
1	농로	호계제농로	2026년	100	배수로(D1000) L=6m 석축쌓기(H=1.5~2.8m) L=57.5m	
2	세천	평지마을세천	2026년	100	석축쌓기(H=2.6m) L=86.5m	
3	세천	입석마을세천	2026년	100	석축쌓기(H=1.3~3.0m) L=135m	
4	세천	청계마을세천	2026년	200	석축쌓기(H=1.8~3.7m) L=148m	

※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계획 : 사업 시기, 예산, 내용 등은 국도비 지원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3. 문의처(관련부서) : 순창군청 안전재난과 (☎063-650-1864)

<위치도 및 현황사진>

호계제농로



평지마을세천



입석마을세천



청계마을세천



순창군 고시 제2026-133호

순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 변경(2차) 승인 고시

순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6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.

2026. 7. 2.

순 창 군



1. 사업의 명칭 : 순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
 2. 사업의 목적 : 순창읍으로 집중되는 7개 읍·면의 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하기 위해 순창읍 상위거점과 6개 면지역 하위거점의 연계 및 핵심 수요계층에 대한 서비스 개선
 3. 총사업비 : 16,000백만원(군특 11,200, 도비 1,440, 군비 3,360)
 4. 주요 사업(변경)내용
가 기초생활기반
 - 1) 복합플랫폼 두드림센터(4층, 연면적 1,508㎡)
 - 내부 변경(1층 공유주방, 2층↔3층 실 위치 변경 등)
 - 2) 서비스 접근가로 안전·문화플랫폼(도로정비 3,838㎡, 주차장 조성 1,179㎡)
 - 주차장 부지 이동식 화장실 2개소 설치
 - 3) 그린 서비스 복합마당(공원정비 16,679㎡)
 - 배수개선을 위한 유공관 설치, 분수대 데크 교체, 퍼걸러 교체 등
 나. 지역역량강화 : 두드림 인재육성, 두드림 공동체 활성화, 두드림 공동체네트워크 구축, 생활밀착형 서비스, 두드림 꾸러미, 생활환경 가꾸기, 전문교육 지원, 배후마을 서비스 발굴 및 전달, 순창군 추진사업 진단 및 개선, 순창군 주민단체 진단 및 교류
 5. 사업시행자 : 순창군수(대행기관 : 한국농어촌공사)
 6. 사업시행기간 : 2021년 ~ 2027년(7년간)

※ 시행계획 변경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농촌활력과에 비치된 시행계획서 열람가능
(농촌활력과 소도읍개발팀 ☎ 063-650-1766)
- 붙임1. 수용 또는 편입 토지 조서

일련 번호	토지 소재지		지번	지목	면적(㎡)		토지소유자	관계인			비고
	읍	리			공부상 면적	편입 면적		성명	성명	주소	
1	순창	순화	188	대	469.7	469.7	국(교육부)				복합 플랫폼 두드림센터
2	순창	순화	189	대	696.0	696.0	순창군				
3	순창	순화	190	대	673.5	673.5	순창군				
4	순창	순화	219	대	277.0	277.0	순창군				
5	순창	남계	655-1	도	1,055.6	1,055.6	순창군				서비스 접근 가로 안전 문화 플랫폼
6	순창	남계	968-88	도	593.3	56.0	국(건설부)				
7	순창	순화	217-1	도	203.2	203.2	순창군				
8	순창	순화	912-46	도	1,051.7	69.0	국(건설부)				
9	순창	순화	188-1	도	642.0	642.0	순창군				
10	순창	순화	183-1	도	693.4	217.0	순창군				
11	순창	순화	173-1	도	546.6	546.6	순창군				
12	순창	순화	167-1	도	302.6	302.6	순창군				
13	순창	순화	159-1	도	302.4	94.0	순창군				
14	순창	순화	118-15	도	566.9	566.9	순창군				
15	순창	순화	117-13	도	98.7	98.7	순창군				
16	순창	순화	116-5	도	318.7	318.7	순창군				
17	순창	순화	170-1	대	554.9	554.9	순창군				
18	순창	순화	237	대	498.2	498.2	순창군				
19	순창	순화	238	대	103.2	103.2	순창군				
20	순창	순화	241-5	대	221.1	221.1	순창군				
21	순창	순화	149-2	도	528.9	149.0	국(건설부)				
22	순창	순화	193	대	497	497	순창군				
23	순창	남계	303-3	공	16,679.4	16,679.4	순창군				그린서비스복합마당
24	순창	순화	193-2	대	21.1	21.1	임**				주차장부지 토지교환
25	순창	순화	193-3	대	1.1	1.1	임**				

순창군 고시 제2026-136호

쌍치면 용전지구 개간사업 준공 고시

『농어촌정비법』 제11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『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』 제9조에 따라 개간사업 준공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7월 15일

순창군수

1. 사업의 목적	개간사업(밭작물 재배)	
2. 사업의 위치	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쌍치면 용전리 산43번지(163-1)	
3. 사업시행자	성명	전 * *
	주소	순창군 용전면 00길 0000
4. 지적/시행면적	4,990㎡ / 4,990㎡	
5. 사업소요비용	10,880,000원	
6. 사업기간	2026. 4. 14. ~ 2026. 6. 18.	
7. 사업효과	농가소득 창출	
8. 이의신청	순창군청(경제산업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자 ☎063-650-1836)	

순창군 고시 제2026-137호

팔덕면 광암지구 개간사업 시행계획 및 지형도면

승인·고시

「농어촌정비법」 제9조제1항 및 제7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시행계획 승인·고시하고, 같은 법 제105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·고시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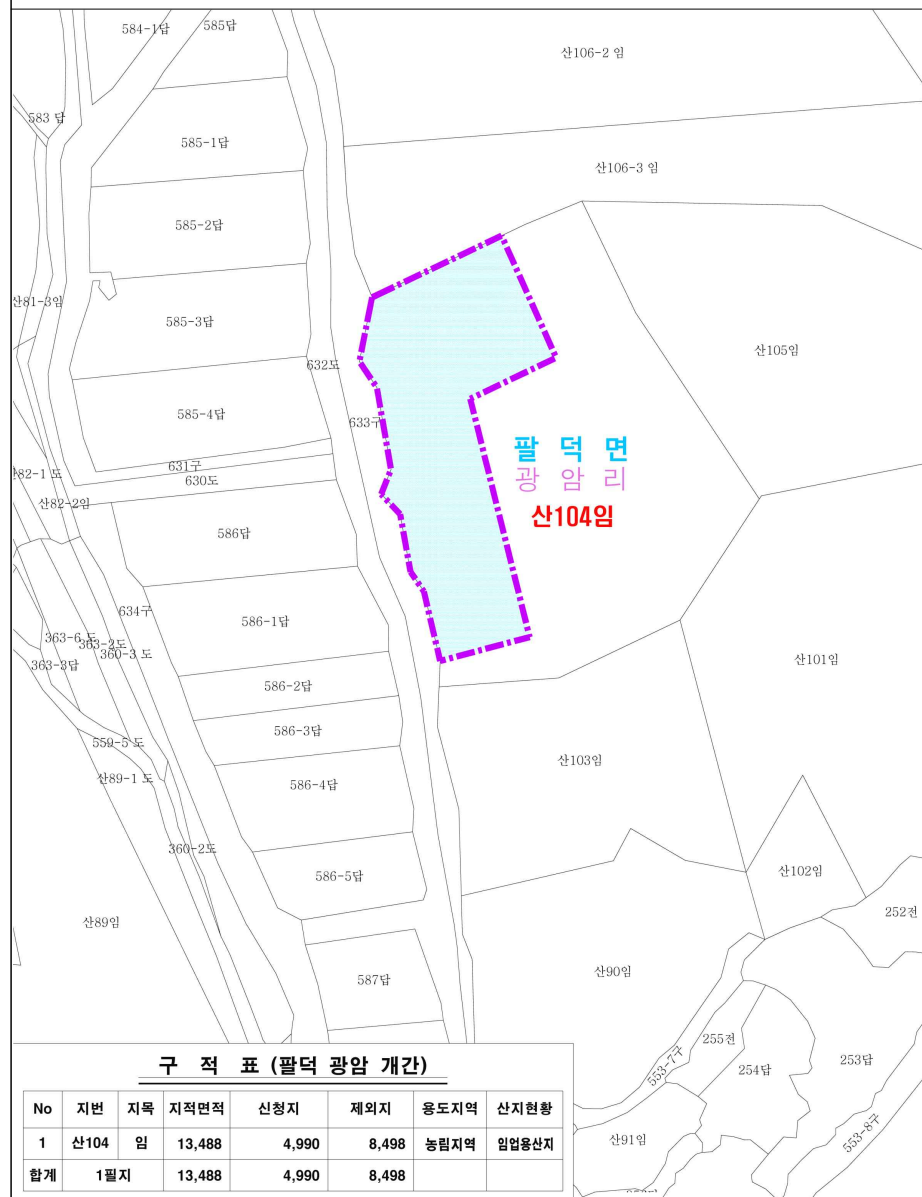
2026년 7월 15일

순창군수

1. 사업의 목적	개간사업(두릅 재배)	
2. 사업의 위치	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팔덕면 광암리 산104번지	
3. 사업시행자	성명	홍 * *
	주소	전북 순창군 순창읍 00리 000-0
4. 지적/시행면적	13,488㎡ / 4,990㎡	
5. 사업소요비용	6,210,000원	
6. 사업기간	2026. 06. 17. ~ 2027. 06. 17.	
7. 사업효과	농가소득 향상	
8. 이의신청	순창군청(건설과 농업기반담당자 ☎063-650-1836)	

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(개간) 지형고시도면

■ 위 치 :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팔덕면 광암리 산104번지



순창군 고시 제2026-138호

적성면 석산지구 개간사업 시행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·고시

「농어촌정비법」 제9조제1항 및 제7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시행계획 승인·고시하고, 같은 법 제105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·고시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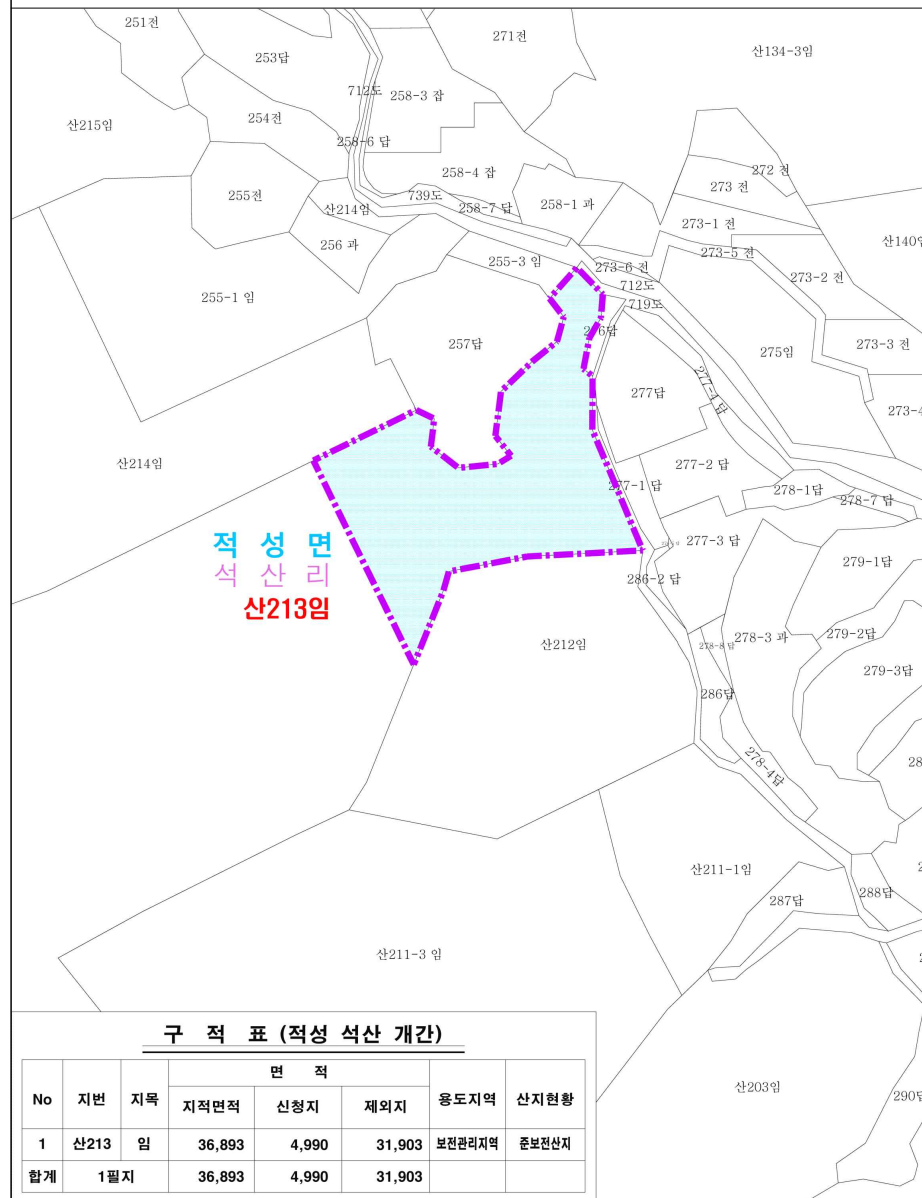
2026년 7월 15일

순창군수

1. 사업의 목적	개간사업(두릅 재배)	
2. 사업의 위치	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적성면 석산리 산213번지	
3. 사업시행자	성명	김 * *
	주소	서울 관악구 000길 00
4. 지적/시행면적	36,893㎡ / 4,990㎡	
5. 사업소요비용	4,710,000원	
6. 사업기간	2026. 06. 04. ~ 2027. 06. 04.	
7. 사업효과	농가소득 향상	
8. 이의신청	순창군청(건설과 농업기반담당자 ☎063-650-1836)	

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(개간) 지형고시도면

■ 위 치 :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적성면 석산리 산213번지



순창군 고시 제2026-139호

인계면 도룡지구 개간사업 시행계획 및 지형도면

승인·고시

「농어촌정비법」 제9조제1항 및 제7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시행계획 승인·고시하고, 같은 법 제105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·고시합니다.

2026년 7월 15일
순창군수

1. 사업의 목적	개간사업(두릅 재배)	
2. 사업의 위치	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인계면 도룡리 산70번지	
3. 사업시행자	성명	정 * *
	주소	경기도 파주시 00로, 000동 000호
4. 지적/시행면적	7,229㎡ / 4,990㎡	
5. 사업소요비용	5,570,000원	
6. 사업기간	2026. 06. 18. ~ 2027. 06. 18.	
7. 사업효과	농가소득 향상	
8. 이의신청	순창군청(건설과 농업기반담당자 ☎063-650-1836)	

구 분	당 초	개 정 (안)
	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 1.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1억원 이하의 단순집행 사무 2. 청소, 방호,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	에는 <u>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</u> 1. <u>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보조를 받는 사무</u> 2. <u>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</u> 3. 「<u>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</u>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. <u>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</u> 5.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1억원 이하의 단순집행 사무로서 <u>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</u> 6. 청소, 방호,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로서 <u>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</u>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

구 분	당 초	개 정 (안)
	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 ④ 군수는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 재계약, 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 ⑤ 제1항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	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 ⑤ 군수는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 재계약, 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 ⑥ 제1항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제9조 (수탁기관 선정방법)	③ 수탁기관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순창군 사무의 수탁자 선정위원회(이하 “선정위원회” 라 한다)에서 선정한다.	③ 수탁기관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순창군 사무의 수탁자 선정위원회(이하 “선정위원회” 라 한다)에서 <u>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한다.</u>
제12조 (선정위원회)	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<u>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다만, 외부 위원을 과반수로 하고,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</u> 2. 변호사·공인회계사·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5. 관계 공무원	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<u>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,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미만으로 하며,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.</u> 2. 변호사·공인회계사·건축사·<u>기술사·노무사</u>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5. 관계 공무원

3. 의견제출

가.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수(참조 : 행정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사항

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·반대의견과 그 이유)

(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하는 곳 : (우)56039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, 순창군청 행정과

(☎ 063-650-1224, Fax 063-650-1229 또는 순창군청 인터넷

홈페이지 <http://www.sunchang.go.kr>)

라. 의견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

4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행정과 주무관(☎063-650-1224)에게 문의바랍니다.

붙임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 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
2.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 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
3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4.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
5.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1억원 이하의 단순집행 사무로서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
6. 청소, 방호,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로서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

제9조제3항 중 “선정한다”를 “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한다”로 한다.

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위촉한다”를 “위촉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,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미만으로 하며,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변호사·공인회계사·건축사”를 “변호사·공인회계사·건축사·기술사·노무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순창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단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탁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	제7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①----- ----- ----- --. <단서 삭제>
1.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1억원 이하의 단순집행사무	<삭 제>
2. 청소, 방호,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	<삭 제>
<신 설>	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	1.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

2.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
3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4.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
5.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1억원 이하의 단순집행 사무로서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
6. 청소, 방호, 청서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로서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
- ② ~ ⑤ (생 략)
- 제9조(수탁기관 선정방법) ①·② (생 략)
- ③ 수탁기관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순창군 사무의 수탁

- 자 선정위원회(이하 “선정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선정한다.
- 제12조(선정위원회) ① (생 략)
-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다만, 외부 위원을 과반수로 하고,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1. (생 략)
2. 변호사·공인회계사·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
3. ~ 6. (생 략)
- ③ ~ ⑧ (생 략)
-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한다.
- 제12조(선정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- ② ----- 위촉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,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미만으로 하며,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. <단서 삭제>
1. (현행과 같음)
2. 변호사·공인회계사·건축사·기술사·노무사 -----
3. ~ 6. (현행과 같음)
- ③ ~ ⑧ (현행과 같음)

[별지 서식]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날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찬 반 여 부		의 견	비고
	찬 성	반 대		